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35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이광희·박용갑·정진욱

주철현 • 박해철 • 민형배

박 정ㆍ김 윤ㆍ김준혁

민병덕 · 김우영 · 양문석

이재강 · 조계원 · 김성환

임미애 · 모경종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지만, 경찰 청에서 파견한 경찰을 통해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구성 요건과 절차에 어긋나는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함에도 국회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청 파견 국회경비대가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여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국회경비대가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 국회 직원 및 중요인사에 대한 경호 활동과 국회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 수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제144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 제목 "(경위와 경찰관)"을 "(국회의 경호)"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국회에 경위(警衛)를"을 "필요 무장을 한 국회경비대를 사무처 소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호업무는"을 "국회경비대와 과견 경찰공무원의 경호업무는"으로, "지휘를"을 "지휘·감독을"로, "경위는"을 "국회경비대는"으로, "안에서"를 "안팎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회경비대는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 ⑤ 국회경비대 구성,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	제144조(국회의 경호) ①		
의 경호를 위하여 <u>국회에 경위</u>	<u>필요</u> 무장을 한		
(警衛)를 둔다.	국회경비대를 사무처 소관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호업무는</u> 의장의 <u>지휘를</u>	③ 국회경비대와 파견 경찰공		
받아 수행하되, <u>경위는</u> 회의장	<u>무원의 경호업무는지</u>		
건물 <u>안에서</u> , 경찰공무원은 회	<u> 휘·감독을국</u>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u>회경비대는안팎</u>		
	에서		
<u> <신 설></u>	④ 국회경비대는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u>.</u>		
<u> <신 설></u>	⑤ 국회경비대 구성,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으로 정한다.		